

2023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공고

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60조의3 및 「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242호)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청기간 : 2023년 9월 1일(금) ~ 2023년 9월 22일(금) 18:00

2. 신청자격 : 화주기업, 물류기업

3. 신청방법

가. 신청서 접수

○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 및 녹색물류홈페이지(<http://kotsa.or.kr/gl>, 공지사항)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

○ 접수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교통물류정책처(이하 '지정센터'라함)

* 주소 (우 39660)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

** 전화 : 054-459-7457, 7151, 홈페이지 : www.kotsa.or.kr

○ 신청서 제출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

※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e-mail 접수 불가

나. 심사 수수료 납부

-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200만원이며, 지정센터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, 신청기업에 수수료 납부방법을 통보
-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정산결과는 신청기업에 통보

4. 제출서류

- 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1부(붙임 1)
- ②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보고서 10부
- ③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1부(붙임 2 참고)

5.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

- 선정기준 및 절차는 「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」(이하 '규정')(붙임 4) 제9조 및 제10조, 지정평가 기준(붙임 3)에 따름
- 선정결과 발표(예정) : 2023년 11월 중 공고

*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 및 녹색물류홈페이지(<http://kotsa.or.kr/gl>, 공지사항)

6. 유의사항

-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정센터(☎ 054-459-7457, 715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별첨

- 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(별지 제16호 서식)
-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평가항목별 구비서류(규정 별표1)
-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평가 기준(규정 별표2)
- ④ 「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242호)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
단 장	아주대학교	교 수	최 시 영
평가지표 1	인하대학교	교 수	김 용 진
	현대글로벌비스	안전환경팀장	윤 지 현
평가지표 2	한국교통연구원	박 사	장 소 영
	솔루티스	이 사	강 지 훈
평가지표 3	서울시립대학교	교 수	김 도 경
	인천대학교	교 수	신 광 섭

평가 항목	분야	소 속	직위	성 명	위원구분*
1	학 계	인하대	교 수	김용진	1
	학 계	서울대	교 수	장수은	1
	학 계	계명대	교 수	정병두	1
	연구기관	한국교통연구원	실 장	서상범	1
	연구기관	서울연구원	연구위원	신성일	1
	연구기관	한국철도기술연구원	단 장	권용장	1
	전문기관	에코아이	상 무	안상전	2
	전문기관	에코프론티어컨설팅	본부장	고순현	2
	전문기관	케이에프이앤이	대 표	최상진	2
	기 업	진양로지스틱스	전문위원	최시영	2
	기 업	현대글로벌비스	안전환경팀장	윤지현	2
2	학 계	성결대	교 수	한종길	1
	학 계	인천대	교 수	김태복	1
	학 계	인하대	교 수	김종배	1
	학 계	세종대	교 수	전의찬	1
	학 계	평택대	교 수	백종실	1
	학 계	경북대	교 수	오상엽	1
	연구기관	한국교통연구원	박 사	장소영	1
	단체 및 협회	한국물류관리사협회	회 장	구교훈	2
	단체 및 협회	대한상공회의소	팀 장	임재국	1
	단체 및 협회	국제경영컨설팅	대 표	최철수	2
	전문기관	솔루티스	이 사	강지훈	2
3	학 계	서울시립대	교 수	김도경	1
	학 계	인천대	교 수	신광섭	1
	학 계	수원대	교 수	장영기	1
	학 계	서울시립대	교 수	박동주	1
	연구기관	한국교통연구원	부연구위원	권혁구	1
	전문기관	솔루티스	이 사	서민석	2
	전문기관	경영인증원	위 원	이순우	2
	단체 및 협회	한국능률협회컨설팅	팀 장	김병삼	2
	단체 및 협회	한국통합물류협회	사무국장	나재봉	2
	단체 및 협회	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	이 사	이상민	2

위원구분	대 상
1	대학, 국.공립연구소, 정부출연연구소, 대학연구소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의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
2	물류 또는 에너지 관련 협회.전문기관.단체,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사람
3	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

붙임 4

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양식

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16호서식]

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
신청자	기업명 (영 문)			사업자(또는 법인) 등록번호	
	주소	본사			전화번호
		사업장			전화번호
	대표자 성명			생년월일	
	담당부서	부서명			전화번호/FAX번호
성명			전자우편주소		
기업구분	화주(제조)[]			물류업종	화물운송 []
	화주(유통)[]				물류시설운영[]
	물류 []				물류서비스 []

기업현황	자본금 (억원)	종업원 수		주사업 분야	물류시설 현황	차량대수 (직영,위수탁, 업무용 차량 등 모두 포함)	매출현황(최근 3년간)	
		정규직	임시직				년도	매출액(억원)

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6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
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 3. 제14조의7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및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
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심사	➔	지정	➔	지정서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 (수탁기관)		처리기관 (수탁기관)		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		국토교통부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정기점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90일
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)	전화번호
	소재지	

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4의2제4항 및 「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정기점검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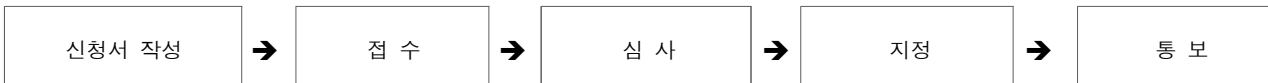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「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」 별표 1의 구비서류 1부	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국토교통부(지정업무 대행기관)

평가항목	구비서류
1. 관리범위 및 관리수준	
1-1. 물류시설,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	물류시설, 운송수단 등 보유시설 및 장비 현황 보고서(차량의 경우 위수탁, 용차까지 포함), 중·장기 경영전략 보고서, 환경친화적 물류경영 조직 현황 및 업무분장표, 환경친화적 물류경영 이해관계자 정보공유 체계 보고서 등
1-2.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, 온실가스 배출량, 화물운송량 관리 수준	에너지사용량 및 수송량 수집절차 설명서,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(최근 3년간), 소속별, 협력기업별 온실가스 공유 현황,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등
2.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	
2-1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	연도별 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 또는 효율화 추진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서 등
2-2. 물류분야 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을	연도별 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 또는 효율화 목표 설정 및 달성 보고서 등
3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효과분석 및 정부보고	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효과분석 보고서,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성과지표 운영보고서, 지속가능경영보고서(해당기업만 제출), 정부보고서 또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검증보고서 등

□ 3개의 평가항목과 1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,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1. 관리범위 및 관리수준 (30점)		
1-1. 물류시설,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 범위 설정 및 관리 체계 구축(15점)	가. 물류시설, 운송수단 등에 대한 관리범위 설정 수준 나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경영목표의 설정여부 및 내용 다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조직 및 인력 배치, 내외부 이해관계자간 소통·협력 등 추진체계의 구축 범위 및 정도, 장단기 계획 수립현황	5 5 5
1-2.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, 온실가스 배출량, 화물운송량 관리수준(15점)	가.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, 화물수송량 산정 범위 관리수준 나.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, 화물수송량 산정 자료와 정보의 정확성 및 이해관계자간 공유 실천 정도 다.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, 화물수송량 산정 시스템의 기계화 또는 IT화 추진 수준	5 5 5
2.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(40점)		
2-1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적(20점)	가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사업의 과제 수 및 내용, 사업 및 투자 규모(양 또는 비율) 나. 환경친화적 물류사업 계획 대비 실적	10 10
2-2. 물류분야 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을 (20점)	가. 물류분야 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 또는 효율화 목표 설정 나. 물류분야 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 또는 효율화 목표 달성을	10 10
3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효과분석 및 정부보고(30점)	가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실적의 주기적인 평가 및 효과 분석 실시, 정확성 수준 나. 정부보고 또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검증실시 여부 다. 환경친화적 물류지표의 설정 및 측정 여부(예, 물류공동화량(율), 전환수송 전환량(율) 등)	10 10 10
합 계		100

붙임 7

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

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

[시행 2022. 5. 2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242호, 2022. 5. 2., 일부개정.]



국토교통부(물류정책과), 044-201-3999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60조의3, 제60조의4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,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위원회"(이하 "지정위원회"라 한다)란 「물류정책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0조의2의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말한다.
2. "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"(이하 "지정심사대행기관"이라 한다)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0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제출서류)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14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지정위원회의 업무)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업무규정의 승인
2. 삭제
3.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정심사결과 심의 및 지정여부 결정
4. 제10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재심사
5.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이 요청한 이의신청
6. 삭제
7.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
8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, 지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

제5조(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고,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지정심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(이하 "지정센터"라 한다)을 설치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정심사대행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지정센터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
2. 지정관련 업무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
3.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지정심사대행기관의 업무)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60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신청의 접수
2.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관련 업무규정의 제·개정
3. 제9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·운영
4. 제10조에 따른 지정심사 및 지정심사 계획수립과 지정심사 결과의 보고
5. 제10조 및 제11조의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

6. 제13조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처리
7.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수립과 정기점검 결과의 보고
8. 제17조에 따른 지정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
9. 지정제도 홍보
10. 그 밖에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
제7조(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도·감독) 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6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정심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지정심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·운영) ①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제도의 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심사위원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그룹은 별표 2의 평가항목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1. 대학, 국·공립연구소, 정부출연연구소, 대학연구소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의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
2. 물류 또는 에너지 관련 협회·전문기관·단체,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사람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

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서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위원을 평가항목별로 2명 이상으로 선발하여 총 7명 이상으로 지정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심사단 위원 중 1명을 지정심사단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정심사 등) ① 지정심사단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 한다. 1차 심사는 신청인이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 등에 대해 지정심사단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② 2차 심사는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 집계 결과 시행규칙 제14조의7제1항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2할 이상을 취득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. 이 경우 지정심사단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신청인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지정심사단은 지정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정심사대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점수 결과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⑤ 지정위원회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이 요청한 지정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지정위원회는 제4항의 지정심사 결과를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심사단을 참석시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⑦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심사대

행기관의 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.

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, 지정이 결정된 기업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의신청 절차) ① 제10조제9항의 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0조제9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(이하 "이의신청자"라 한다)는 재심사요청 사유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요청 사유서가 제출되면 재심사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정표시)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(이하 "지정업체"라 한다)는 별표 3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정서의 재발급 신청 등) ① 지정업체가 발급받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서(이하 "지정서"라 한다)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사유서

2. 지정서(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)

② 지정업체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사유서

2. 지정서

3.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, 변경 전의 지정서는 회수하여야 한다.

④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화재, 도난, 분실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정취소 통보 등) ① 법 제60조의6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 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지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지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20일 이내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,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과 처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,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정기점검 등) ①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지정업체가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점검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기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, 지정업체에 정기점검일 14일 이전에 정기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일을 통보받은 지정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업체 심사 신청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지정업체에 대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기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.

④ 제3항의 정기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심사대행기

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심사 요청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.

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재심사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고,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재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후 세 차례의 정기점검에서 연속으로 지정을 유지한 지정업체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한 차례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의 면제실적과 사유를 지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16조(비밀유지의 의무) 지정위원회, 지정심사대행기관 및 지정심사단의 지정업무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표·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수수료)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실비를 기준으로 2백만원 이내에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고,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2-242호, 2022. 5. 2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